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 해외 법제화 자격 및 국내 민간자격을 기반으로*

임 지 숙 손 보 영 백 상 은[†]

명지대학교 / 교수 선문대학교 /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강사

본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수련기관 인증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국내외 수련기관 인증 요건을 조사하여 필수 요건을 갖춘 국내 수련기관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심리사와 상담사, 대만, 일본의 수련기관 인증 요건 및 과정, 수련내용 등을 조사하였고 호주의 경우, 수련기관 인증에서 주요한 부분인 수퍼바이저의 자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수련기관 인증 요건과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하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필수 요건을 갖춘 수련기관 인증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기 발의된 법안, 선행연구, 해외 법제화 사례를 기반으로 수련기관 중심의 수련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제화된 국가들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인적(全人的) 상담자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수련기관 인증체계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내담자가 전문성을 갖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수련기관 인증이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련기관 인증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 수련, 수련기관, 법제화, 민간자격, 심리상담 전문가, 인증 모형

* 본 연구는 2023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과정인증TF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분석 결과에는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과정인증TFT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결과 발표 및 출간에 대해 2023년 동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2023년 11월 1일)을 받았음.

† 교신저자 : 백상은,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Tel : 02-498-8293 E-mail : 100sangeun@hanmail.net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vid-19 이후, 산업의 고도화와 반비례하며 진행되어온 정신건강의 악화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과 면담, 적절한 심리평가를 통한 치유와 안녕감(well-being) 향상을 통해 일상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을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어졌고, 제 21대 국회에서 심리상담 관련 법률안으로 심리상담사 법안(최종윤 외 9인, 2022),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외 9인, 2022), 심리사 법안(서정숙 외 10인, 2022), 상담사 법안(심상정 외 9인, 2022),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법안(김민철 외 9인, 2023)이 발의되었다.

2년여 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상담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법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엄청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의 수와 전 세계의 정신케어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에서 심리상담의 수요가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정보를 살펴보면 '심리' 4,105건, '상담' 5731건의 민간자격이 검색되며 '심리상담'을 키워드로 하면 총 3,295건의 민간자격이 검색된다(2024. 1. 16. 기준, www.pqi.or.kr). 또한, 아직 우리나라 심리상

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없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얼라이드 마켓리서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 전 세계 정신 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3833억달러(약 515조 원)였고, 2030년에는 5380억달러(약 7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이은영, 2022). 그러나, 위와 같은 엄청난 심리상담 수요와 정신 케어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심리상담은 법률 체계 속에서 뚜렷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성현모, 이상민, 2021; 이상민, 2020).

심리사법안을 토대로, 심리사의 교육, 수련, 자격 관리 관련 하위 법령에서 향후 상세화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한 연구(박중규 등, 2022)에서는 자격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수련기관에 관한 규정, 수련기관 인증 평가에 관한 규정, 심리사 관련 교육기관 및 수련기관 전체 총원에 관한 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에서도 수련기관과 수련기관의 인증, 수련기관의 인증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정의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기법안에서 수련기관은 전문상담사 실무수련을 위해 한국전문상담교육평가원이 인증한 기관으로 정의하였고,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수련기관 등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인증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540호). 별도의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모법 수준의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 수련 기관 인증 과정과 인증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아직 심리상담과 관련한 모법 수준의 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기관 인증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견의 폭을 좁히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전문성의 핵심인 교육과 수련과정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몇 개의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부터 최소 1년~수년간의 시간적, 경제적 자원을 쏟아붓고 시험과 수련의 지난 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까지 엄청난 스펙트럼의 자격증이 모두 민간자격으로 공존한다는 점, 더 엄밀히는 심리상담 관련 학문에 대해 무학에 무자격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모법 수준의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밀작업과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담자 전문성의 본질인 교육과 수련에 대한 논쟁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인증된 기관에서 수퍼바이저의 수련감독 하에 기본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고 세부적인 전문성을 함양하여 자신의 특화된 분야를 갖는 체계를 공통적으로 거쳤다면 다학제간의 특성이 존재하더라도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수련기관과 수련기관 인증의 중요성은 앞에서 논의한 관련 법률안을 통해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수련기관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상담기관에서 수

련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15명의 인턴 상담원을 대상으로 상담자 발달에서의 결정적 사건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에서(이홍숙 등, 2011), 6개의 영역(내담자와의 만남, 정체성 발달, 상담 기술, 수련과정에 대한 동기 및 기대,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준 관계, 수련기관의 환경요인)이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영역의 결정적 사건 경험 중 내담자와의 만남, 정체성 발달, 상담 기술의 세 영역이 상담자 발달을 증진시키는 주요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이 주요 경험들은 수련 과정에 대한 동기 및 기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 수련기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지되거나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기관의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수퍼비전, 사례발표, 개인상담의 실제 경험, 이론교육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인턴 상담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턴 상담원들에게 체계가 있고 보장된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하여 안정적인 상담원의 성장을 돋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심리서비스 기관에 재직 중인 심리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에 따르면(한국심리학회, 2020),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 시 요구되는 교육 및 수련 조건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이미 많은 심리학 전공 학사의 경우 석사나 박사가 코스처럼 되고 있어 오히려 수련이나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지속적인 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력도 중요하지만 검증할 수 있는 국가고시와 충분한 수련기관, 자격증 취득 이

후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또는 2급을 취득하고 상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회의 성과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내부 요소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학회에 수련기관 인증제도가 부재하여 수련기관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학회의 주요 약점으로 밝히며, 수련생들이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수련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안하얀 등, 2019). 즉, 심리상담은 기술적 지식과 함께 실제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이 중요하며(Schon, 1983) 이것이 체계(system)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수련기관과 수련기관 인증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구체적으로 수련기관을 통한 수련이 왜 중요한지나 국내에 적용 가능한 수련기관 인증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나라의 구체적인 수련기관 인증 및 관리체계, 국내 유사 민간자격 중 수련기관 인증체계를 갖춘 경우를 조사하고, 2)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경우,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 미국 상담사 수련 프로그램,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 대만 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해 살펴보았고, 국내 심리상담 관련 자격 수련기관 인증 기준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필수수련기관,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교육연수기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을 조사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수련을

위한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수련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법제화된 해외 국가의 수련기관 인증 기준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

미국은 주별로 자격 관리를 하고 있어 심리사 취득 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취득 과정은 대체로 유사하다. 미국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 [LP])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승인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¹⁾, 박사 인턴십(doctoral internship)과 박사후 레지던트(postdoctoral residency) 과정을 통해 수련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사학위와 수련 요건을 충족하면 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Boards(ASPPB)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시험(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EPPP)과 법과 윤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법과 윤리 시험은 주법에 따라 다르고 주에 따라 실시하는 곳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박사 인턴십 수련에 초점을 두었으며 미국심리학회(APA)의 인증을 받아 박사 인턴십 수련을 진행 및 관리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은 심리사로서의 역량을 충족시키고 직업적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1) 박사학위 과정 중에도 상담 실습이 진행됨

수련 경험 및 교육을 실습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충분한 수와 다양성을 갖춘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련기관의 예로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교정 시설 (correctional facility), 건강 관리 기관(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병원 혹은 의료 센터(hospital/medical center), 군 의료센터(military medical center), 정신병원(psychiatric facility), 학교(school district or system), 대학 상담센터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보훈병원(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등이 있다.

수련기관 인증 과정

APA 인증 수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CoA)에서 제시한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해 기술 및 설명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반적인 수련기관 인증 과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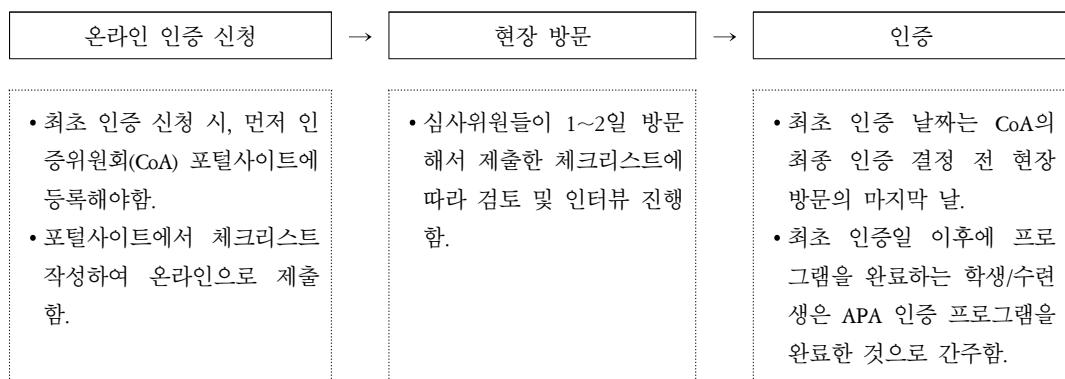
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APA에서 수련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위원회(CoA)에서 제시하는 양적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질적 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혹은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증위원회(CoA) 포털사이트(<https://accreditation.apa.org/accreditation-process/self-study>)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을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의 평가,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은 수련활동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급여)을 제공하고, 수련활동을 위한 물리적 자원 및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개인차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턴과 교수진 혹은 직원을 프로그램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련생 개개인에게 지지적이고 촉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1에 재정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대한 양



주. APA - CoA 공식 홈페이지(accreditation.apa.org)의 내용을 토대로 인증 과정을 정리함.

그림 1.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 인증 과정

표 1.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수련기관의 환경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재정적 환경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급여 금액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설명 지난 10년간 인턴에게 지원금 지급 불이행 여부 및 불이행의 사유
물리적 환경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 기술, 전자기기 지원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분야의 교육 자료, 장비, 최신 지식 체계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 관련법 준수하며 보안 시설 갖춘 물리적 시설
문화적 환경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 환경과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 인턴이 문화적, 개인적 차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 합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을 방지하는 방법 지원자, 인턴, 직원 등이 지원 전에 고용 정책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소속 혹은 목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수퍼바이저와 인턴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인턴에게 교육 기회 제공하기 위한 방법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턴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인턴과 수퍼바이저의 관계가 협력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적 및 질적 평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박사 인턴십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기간은 대체로 전일제(full-time) 수련생의 경우 12개월 이상, 시간제(part-time) 수련생의 경우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은 크게 심리상담, 심리평가, 교육, 수퍼비전 및 기타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각 주의 각 수련 기관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수련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심리학회(APA) 인증을 받은 수련기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수련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서의 수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제공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주요 교육 방법은 경험적이어야 한다, 즉 내담자와 직접 접촉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실습에 기반해야 한다'거나 '프로그램은 모든 인턴들이 상담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인 수퍼비전은 실습생이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될 준비가 되도록 수퍼바이저의 충분한 관찰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된다.

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ervices, Tang Center (출처:

임지숙 등 /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 해외 법제화 자격 및 국내 민간자격을 기반으로

표 2.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의 예 (박사 인턴십 기준)

주	수련 내용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주당 10~15시간), 상담 관리 업무 및 일지 작성(주당 6~8시간) 등
캘리포니아주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²⁾	심리평가 심리검사
	세미나(주당 6~8시간, 상담(윤리적 문제, 단기 치료, 임상평가 및 치료 계획, 위기 평가 및 개입, 트라우마 등), 수퍼비전, 전문성 개발, 다문화, 아웃리치 지원 활동, 진로 등), 사례 회의(주당 2시간) 등
	수퍼비전 개인 수퍼비전(주당 2시간),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등
	기타 석사 실습생 지도(주당 2시간), 연구(주당 2시간) 등
뉴욕주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³⁾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주당 40시간 중 약 2/3) ⁴⁾ , 집단상담, 접수면접, 위기 관리, 상담 관리 업무 및 일지 작성 등
	심리평가 심리검사(수련기간 동안 약 3~5개 심리검사 배터리(battery) 실시)
	세미나(주당 2시간, 심리검사, 자살 위험 평가, 트라우마, 직업 윤리 등), 사례 회의(학기당 약 6회), 다문화 상담 교육(주당 1시간), 심리검사 교육 (매주) 등
	수퍼비전 개인 상담에 대한 개인 수퍼비전(주당 2시간), 트라우마 관련 개인 상담에 대한 집단 수퍼비전(주당 1시간), 집단상담에 대한 집단 수퍼비전(주당 1시간), 검사에 대한 개인 수퍼비전(1시간), 접수면접에 대한 집단 수퍼비전(2시간), 수련생 필요에 따라 워크숍, 아웃리치 지원 활동, 연계 등에 대한 수퍼비전 등
기타	석사 실습생 지도, 멘토링, 아웃리치 지원 활동(학기당 2회) 등

수련기관 프로그램의 평가

수련기관 프로그램은 수련생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상담자

<https://uhs.berkeley.edu/counseling/about/training-programs/doctoral-internship-health-service-psychology>

3) Baruch College Counseling Center (출처: <https://studentaffairs.baruch.cuny.edu/counseling/doctoral-psychology-internship/>)

4) 주당 40시간 전일제 형태로 수련에 참여하며, 40시간 중 2/3은 직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 시간 중 대부분은 개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함.

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준거하여 수련생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내 심리학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고 수련기관으로써 목표 달성을 기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련 프로그램은 수련 교수진 혹은 직원, 인턴 수련생, 프로그램 수료생과 수련 프로그램 관련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역량 및 목표에 부합하고 전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을 양성하였는지에 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점검, 변경 및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절차들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수련생 및 교수진, 직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 활동, 정책 및 절차가 기관의 사명과 목표, 심리서비스에 대한 지역 혹은 국가적 필요성, 공공 의료 서비스로서의 국가적 표준, 계속 발전하는 과학적 근거 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에는 수퍼바이저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수련기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 목표를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수퍼바이저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 2명의 박사급 수퍼바이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기관은 인증 과정에서 수퍼바이저의 학력이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수련 프로그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 권한을 가진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수련기관의 주별 관할권(jurisdiction)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여야 한다.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및 갱신

수련기관은 최초 인증 결과에 따라 3년, 5년, 혹은 10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 기간이 끝날 때마다 APA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CoA

포털에서 체크리스트 제출 및 현장 방문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 기간을 포함하여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수퍼바이저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2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한다. 자격증 갱신 요건은 CE(continuing education)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이다.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년마다 CE를 36시간 이수해야 하고 그중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수퍼비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국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미국 상담사(License Professional Counselor [LPC]) 자격증 취득을 위해 상담 또는 관련 분야의 대학원 석사학위(학교 상담, 정신건강상담, 상담교육 등 상담학 프로그램)를 취득한 후, 2000~3000시간의 수련 과정과 Nationa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s(NBCC)에서 주관하는 National Counselor Examination(NCE) 또는 National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 Exam(NCMHCE) 시험과 법률 시험(jurisprudence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주마다 진행되는 시험의 종류가 다르지만, 상담사가 되기 위한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대체로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 또는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인증 체계를 따라 운영된다.

수련생은 석사학위 과정 중 일반적인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실습과 전문 분야에서의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인턴십을 이수해야 한다. LPC 자격증은 8개 특정 분야(중독, 진로, 임상 및 정신건강, 임상 재활, 대학, 부부 및 가족, 재활, 학교)의 전문적 실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필요로 한다. 실습은 최소 8주 동안 100시간 이상 이뤄지며 수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실습 경험을 완료해야 한다.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학생들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실제 내담자가 있는 환경에서 수퍼바이저의 감독 아래 600시간의 상담 인턴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평균 1시간 개인 또는 3인조 수퍼비전과 평균 1시간 30분의 집단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CACREP에서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양적 평가 항목에 대한 기술과 함께 자세한 설명 혹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인증 기준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충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적절한 증거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제시하도록 권고한다. 평가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CACREP 공식 홈페이지(<https://www.cacrep.org/for-programs/2024-cacrep-standards/>)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및 개선'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은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실습생과 교수진에게 학습, 교육, 연구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습생 모집에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차를 존중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학습 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사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으로 전문 상담 오리엔테이션 및 윤리적 이슈,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과 경험, 전생 애 발달, 경력 개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 평가,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위의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수련생에게 최소 100시간의 상담 실습과 600시간의 인턴십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담 실습의 경우, 수련생이 실제 내담자와의 대면 개인 및 집단상담을 최소 40시간 진행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은 수련생에게 최소 40시간의 직접적인 대면 상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인턴십의 경우, 수련생은 실제 내담자와의 대면 개인 및 집단상담을 최소 240시간을 진행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은 수련생에게 최소 240시간의 직접적인 대면 상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 실습과 인턴십은 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진행되므로 수련생의 요건에 충족하는 시간과 방식을 고려하여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련기관의 관리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에는 3 종류의 수퍼바이저(상담자 교육 프로그램 핵심교수진, 박사과정 학생 수퍼바이저, 실습기관 현장 수퍼바이저)가 있으며, 각 수퍼바이저는 표 3에 제시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수퍼바이저 혹은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 교육 핵심 교수진은 최소 3명

표 3. 미국 상담사 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수련기관의 관리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수퍼바이저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교수진 (수퍼바이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 대면 및 원격 수퍼비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 수퍼비전 기술 관련 교육 이수 • 박사과정 학생 수퍼바이저 (핵심 교수진의 수퍼비전 받으며 수퍼바이저로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CREP 기준과 일치하는 상담 석사학위 - 대면 및 원격 수퍼비전을 위한 관련 교육을 포함한 수퍼비전 교육 이수 - 핵심 교수진 수퍼바이저로부터 받는 일주일 평균 1시간 정기 수퍼비전 • 실습 기관 현장 수퍼바이저 (수퍼비전 협약에 따라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진과 정기적으로 논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상담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 실습생이 있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상담 관련 자격증 - 실습생이 등록한 CACREP 전문 실습 영역과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최소 2년의 경력 - 대면 및 원격 수퍼비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 수퍼비전 기술 관련 교육 이수 - 실습생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대, 요구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지식 						
핵심 교수진 질적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양적 평가</th> <th>• 핵심 교수진의 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교육 박사학위 취득 (가능하면 CACREP 인증 프로그램) - 관련 박사학위 취득하고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한 경우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인증받은 석사 프로그램에서 박사 수준(level) 전임 교수로 재직한 경우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재활치료 박사 프로그램 졸업한 경우 </td></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 직업에 관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상담 단체에서 지속적인 회원 자격 유지 - 관련 자격증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활동 참여: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발달과 개신 활동, 상담 분야에서의 전문 서비스와 옹호 활동, 지속적인 상담 실무, 상담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 </td></tr> </tbody> </table>	양적 평가	• 핵심 교수진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교육 박사학위 취득 (가능하면 CACREP 인증 프로그램) - 관련 박사학위 취득하고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한 경우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인증받은 석사 프로그램에서 박사 수준(level) 전임 교수로 재직한 경우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재활치료 박사 프로그램 졸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 직업에 관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상담 단체에서 지속적인 회원 자격 유지 - 관련 자격증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활동 참여: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발달과 개신 활동, 상담 분야에서의 전문 서비스와 옹호 활동, 지속적인 상담 실무, 상담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
양적 평가	• 핵심 교수진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교육 박사학위 취득 (가능하면 CACREP 인증 프로그램) - 관련 박사학위 취득하고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한 경우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인증받은 석사 프로그램에서 박사 수준(level) 전임 교수로 재직한 경우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재활치료 박사 프로그램 졸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 직업에 관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상담 단체에서 지속적인 회원 자격 유지 - 관련 자격증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활동 참여: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발달과 개신 활동, 상담 분야에서의 전문 서비스와 옹호 활동, 지속적인 상담 실무, 상담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 						

이어야 한다. 박사과정 학생 수퍼바이저와 실습 기관 현장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방식, 한명의 수퍼바이저에게 배정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박사과정 학생 수퍼바이저가 개인 또는 3인조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경우, 수퍼바이저 대 학생의 비율은 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습 기관 현장 수퍼바이저가 단독으로 개인 또는 3인조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경우와 박사과정 학생 수퍼바이저가 집단 수퍼비전만 제공하는 경우, 수퍼바이저 대 학생 비율은 1: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핵심 교수진은 전임으로 재직 중인 상태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 교수진이 연속 12개월 동안 가르친 교과과정의 학점 수를 합산하였을 때, 제휴 교수진이 가르친 학점 수보다 많아야 한다.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및 갱신

수련기관은 최초 인증 결과에 따라 8년 혹은 2년 인증을 받게 된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년 동안 인증되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부족한 경우 2년 동안 인증되며 2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퍼바이저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2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한다. 자격증 갱신 요건은 CE(continuing education)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이다.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년마다 수퍼비전 관련 CE를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만 심리사 수련기관

대만 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석사학위가 요구되며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1500시간 이상의 인턴십 실습이 필요하다. 이후 대만 시험 고선부(한자: 中華民國考選部; 영어: Ministry of Examination R.O.C., Taiwan)에서 주관하는 전문직업 및 기술인 고등시험 - 심리사 시험(한자: 專門職業及技術人員高等考試心理師考試; 영어: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nior Examination for Psychologist)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시험에 통과하면, 정부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실무 수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 상담 업무 종사자로 등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시험 전 진행되는 인턴십 실습에 초점을 두고, 인턴십 실습이 진행되는 수련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련기관은 교육 병원의 평가와 승인을 거쳐 심리실습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상담심리사 개업 기관이 대표적이다. 대만 심리사 수련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만 보건복지부(한자: 衛生福利部; 영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v.tw/mp-1.html>)와 고선부(https://wwwc.mocex.gov.tw/main/ExamLaws/wfrmExamLaws.aspx?kind=3&menu_id=320&laws_id=113)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의 관리'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환경

대만에서는 수퍼바이저 관리하에 풀타임 수련이 가능한 상근 수련기관의 인증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수련기관에는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이 있어야 하며 실습상담심리사에게 개인 책상, 의자 및 사무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은 폰타임 수련을 하는 상근실습상담심리사에게 적절한 수련시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련 방법을 수립하고, 수련 매뉴얼을 제작 및 인쇄하여 상근실습상담심리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련 내용은 상담과 심리평가, 교육, 수퍼비전,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담은 개인, 결혼 또는 가족상담, 집단상담을 포함하고, 심리평가는 평가 전반, 교육은 정신건강 전반의 교육을 의미한다. 수련기관은 실습상담심리사에게 전문적인 개인 수퍼비전(연간 주 1시간 이상 최소 50시간)과 집단 수퍼비전 및 교육(주 2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기타 수련에는 예방 및 홍보사업, 상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행정관리 업무, 수련기관 회의, 기타 심리상담 관련 자체 선택 항목(정신장애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관리 또는 사례관리 등)이 포함된다.

수련시간은 9주 또는 3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9주 또는 360시간 이상 개인 상담, 결혼 또는 가족 상담, 집단상담, 심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상근실습상담심리사에게 집단 수퍼비전 및 교육(집단 수퍼비전, 현장 훈련, 수련기관 회의, 사례 검토 및 수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부 교육 포함)을 일주일에 평균 2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에는 최소 1명의 전임상담심리사

및 자격증이 있는 상담심리사가 있어야 한다. 수퍼바이저는 매주 최대 2명의 실습상담심리사를 감독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와 상근실습상담심리사의 비율은 최대 1:2이다.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

일본은 공인심리사 취득을 위해 최소 석사학위를 요구한다. 또한, 수련 요건으로는 학사학위 중 실습과 석사학위 중 실습이 모두 요구되며, 각 학위 과정에서의 수련시간이 상이하다. 학사학위 중에는 80시간 이상, 석사학위 중에는 270시간 이상이 요구된다. 또한, 석사학위 대신, 학사학위 취득 후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시설에서 실무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학사학위 중 80시간 이상 실습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실습을 완료하면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는 공인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부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최소 720시간 이상의 수련을 진행해야 하고 수련을 완료하면 공인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시험 전 진행되는 실습과정인 학사학위 실습과 석사학위 실습 중 석사학위 중 실습이 진행되는 수련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본의 수련기관(일본에서는 실습시설이라고 부른다)은 공인심리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로, 수련생에게 내담자의 심리 상태 관찰 및 관찰 결과 분석, 내담자 대상 심리상담, 보호자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의료, 복지, 교육, 사법·범죄, 산업·노동 5개의 분야(이하 주요 5분야)의 시설이 있다. 대학원

수련생은 5분야 중 학외시설 3분야 이상의 시설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보건의료 영역으로써 의료기관(병원 또는 진료소)에서의 실습은 필수이고 이외 시설에서의 실습은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실습이 가능하다.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후생노동성(한자: 厚生労働省; 영어: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16049.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의 관리'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환경

인증 신청을 원하는 수련기관의 책임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부과학대신(大臣) 및 후생노동대신(大臣)에 제출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환경은 재정적 환경(구체적 급여 금액, 외부 연수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 유무)과 물리적 환경(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는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 평가하므로 각 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생이 공인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리지원 실시(심리상담서비스 제공)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생의 심리지원 실시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인심리사법의 프로그램 달성 목표에는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팀을 이뤄 심리지원을 하는데 있어, 공인심리사의 역할과 역할 분담에 대해 이해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은 1명 이상의 수퍼바이저가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에게 지도 혹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퍼바이저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는 5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수퍼바이저는 공인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심리사로서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문부과학대신(大臣) 및 후생노동대신(大臣)이 별도로 정한 기준(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이수)을 충족해야 한다.

호주 심리사 수퍼바이저

호주의 수련기관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수퍼바이저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수퍼바이저는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Board-

표 4. 일본 심리사 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수련 내용	• 수련생이 담당하는 사례 수 (인증 기준: 3례 이상의 사례 담당) • 5분야 중 수련생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의 분야 이외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견학이나 연수 시간 (인증 기준: 총 60시간 이상)
	• 수련생이 심리지원 실시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설명 • 다양한 직업군과의 연계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approved supervisor [BAS])와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주수퍼바이저로 구분된다.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는 수련 과정에 필수적인 수퍼비전을 수퍼바이저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퍼바이저의 능력을 확인하여 수퍼바이저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실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가 아닌 전문가가 제공하는 수퍼비전은 위원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실습 중심의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학위과정 후 인턴십 프로그램(5+1), 외국 자격증 취득자의 전환 프로그램 등에는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주수퍼바이저는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관련된 실무 영역에서 최소 2년 이상 등록을 유지한 수퍼바이저로, 수퍼바이저가 종사하고 있는 실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퍼바이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단계인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를 중점으로 수퍼바이저 자격 취득 기준과 수퍼바이저의 자격 유지(갱신기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호주의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심리학 위원회 홈페이지(Psychology Board of Australia [PsyBA], <https://www.psychologyboard.gov.au/Registration/Supervision.aspx>)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인증 요구 조건,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자격을 위한 신청,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자격 유지'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인증 요구 조건: 일반 등록 상태 유지 및 전체 훈련(full training)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3

년 이상 일반심리학자(general psychologist)로서 일반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심리학자는 4년제 심리학과 졸업 후 Australian Psychology Accreditation Council(APAC)이 공인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 교육 과정은 1년 석사학위, 2년 석사학위, 석·박사통합, 박사학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학력 조건에 따라 대학원 과정 내 심리학 실습 시간과 자격시험 여부가 달라진다. 심리학 실습 총 시간은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의 경우 1400시간(이후 추가적인 1540시간 인턴십 필요),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의 경우 88주,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의 경우 66주,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의 경우 44주다. 자격시험은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수련생만 응시하며 나머지 학력 조건의 수련생은 자격시험 없이 필수학위와 수련 요건에 대한 자격 검정만 진행한다. 자격시험 혹은 자격검정에서 통과하면 일반심리학자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교육 제공자(Board-approved supervisor training provider)에게 전체 훈련(full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전체 훈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전체 훈련에 관한 내용은 표 5에 정리하였다. 또한, 훈련의 내용은 수퍼바이저 역량(효과적인 수퍼비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퍼비전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지식과 능력, 수퍼바이저의 심리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능력, 수퍼비전 과정을 평가하는 능력, 수퍼비전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반응,

표 5. 호주 심리사 수퍼바이저 인증 요구 조건 - 전체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7시간
1단계: 지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규정, 지침, 정책과 적절한 수퍼비전에 관한 지식 습득 단계(자기 학습, 읽기, 성찰보고서) • 온라인 평가 통과 시 1단계 이수
2단계: 기술 훈련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2시간 • 수퍼비전 기술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훈련 단계 • 지식과 실무 능력의 통합을 강조
3단계: 역량 기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제공자에게 수퍼비전 세션의 전자기록과 성찰보고서(자기평가 포함) 제출 • 교육 제공자는 수퍼바이저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pass or fail) 결과와 함께 피드백 제공 • 3단계 통과를 위해 3번의 기회 제공, 3번의 기회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1 단계와 2단계를 다시 완료해야 함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자격을 위한 신청

3년 동안 일반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전체 훈련을 완료하면, 위원회 웹사이트에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훈련 수료 증명서 등의 훈련 완료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되면 5년 동안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자격을 갖게 된다. (5년의 승인 기간은 훈련 완료 후 합격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자격 유지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최소 요건 혹은 초과 요건을 이행할 경우에 충족되며, 해당 내용을 표 6에 제시하였다.

보수교육 완료 후,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자격 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위원회 보수교육 수료 증명서 등의 훈련 완료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자격이 보수교육을 완료 한 날짜로부터 5년간 연장된다. 만약, 보수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자격이 소멸되며,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인증 전체 훈련 프로그램 (Board-approved full training program)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는 최소 2년마다 수퍼비전 기술에 관한 추가적인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al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활동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로, 수퍼비전에 관한 동료 자문, 수퍼비전 관련 워크샵, 또는 수퍼비전과 학습, 교육, 멘토링 등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활동 등이 있다.

표 6. 호주 심리사 수퍼바이저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최소 요건	• 마스터 클래스 과정 1개 이수
초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훈련의 2단계 • 전체 훈련의 1단계와 2단계 • 전체 훈련의 2단계와 3단계 • 전체 훈련의 모든 단계 • 1개 이상의 마스터 클래스 과정

주. 마스터 클래스 과정은 최소 6시간의 직접 훈련과 평가 구성 요소를 포함한 역량 기반 수퍼바이저 훈련 워크샵을 의미함. 마스터 클래스 과정은 수퍼비전과 관련된 특정 주제 혹은 특정 분야의 수퍼비전에 중점을 둠.

주. 최소 요건을 선택할지, 초과 요건을 선택할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직무, 관심사 등의 변화를 고려한 자기 평가/ 수퍼바이저 역량에 기반한 자기 평가/ 3단계 훈련 완료 후 경과 시간/ 위원회의 등록 기준, 가이드라인 및 정책의 변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을 위한 학습 계획에 명시된 성과/ 수퍼바이저 및 동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 수퍼비전의 위치와 내용 등.

법제화된 해외 국가의 수련기관 인증 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심리사, 미국 상담사, 대만 심리사,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의 인증 요구 조건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네 국가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의 수련기관으로써 요구되는 조건의 공통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적 조건으로 네 국가의 수련기관 모두 물리적 환경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의 수련기관에서 재정적 환경을 인증 조건으로 제시하며, 특히 미국 심리사와 일본 공인심리사는 수련생에게 일정 급여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네 국가의 수련기관이 제공하는 혹은 할 수 있는 총 수련시간은 상이하였으나, 수련내용은 심리상담 수련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에서 수련생 역량, 프로그램 효과성, 그리

고 평가 체계에 관한 평가를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고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은 수련생 역량 평가를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로 네 국가의 수련기관 모두 수퍼바이저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수련기관에서 프로그램 책임자(미국 심리사, 일본 공인심리사) 혹은 교수(미국 상담사)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수련기관의 자격 갱신과 관련하여 미국 심리사와 미국 상담사 수련기관에서 자격 갱신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호주는 정해진 수련기관 없이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가 수련생의 수련 활동을 관리하므로, 수퍼바이저의 인증 기준을 표 8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미국 심리사, 미국 상담사, 대만 심리사,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의 주요 관리자인 수퍼바이저, 그리고 호주의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인증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다.

표 7. 해외 심리상담 국가자격 수련기관 인증 기준

자격증	환경	내용	평가	관리	자격 쟁신
미국 심리사 자료 및 장비	• 재정적: 급여, 수련 활동 재정 지원 • 물리적: 시설, 사무 장비, 전문 분야 자료 및 장비	• 수련내용: 심리상담, 심리평가, 교육, 수퍼비전, 기타 • 수련시간: 12개월 약 1800~2000시간	수련생 역량 평가, 프로그램 효과 평가, 평가 체계 평가	수퍼바이저, 프로그램 책임자	3, 5, 10년
	• 문화적: 다양성				
	• 재정적: 수련 활동 재정 지원 • 물리적: 학습, 교육, 연구 위한 기술 지원	• 수련내용: 심리상담, 심리평가, 교육, 수퍼비전, 기타 • 수련시간: 실습 8주 100시간 + 인턴 십 600시간		수퍼바이저 (핵심 교수진)	2, 8년
	• 문화적: 프로그램 다양성, 개인차				
대만 심리사	• 물리적: 상담실, 사무 장비	• 수련내용: 심리상담 심리평가, 교육, 수퍼비전, 기타 • 수련시간: 9주 360시간		수퍼바이저	-
	• 물리적: 시설				
일본 공인심리 사	• 재정적: 급여, 외부 연수 활동 지원 • 물리적: 시설	• 수련내용: 심리상담, 전학 혹은 연수 • 수련시간: -	수련생 역량 평가	수퍼바이저, 프로그램 책임자	

표 8. 해외 심리상담 국가자격 수퍼바이저 인증 기준

국가별 자격증	수퍼바이저 인증 조건
미국 심리사 수련기관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기관 내 최소 2명 • 심리사 자격 • 박사학위 취득
미국 상담사 수련기관 수퍼바이저 (핵심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기관 내 최소 3명 • 관련 자격 • 상담 교육 박사학위 취득 • 전문적 활동 참여
대만 심리사 수련기관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기관 내 최소 1명
일본 공인심리사 수련기관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기관 내 최소 1명 • 공인심리사 자격 • 지도자 양성 교육 이수 • 5년 이상 업무 종사 경험
호주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심리학자 자격 • 전체 훈련(full training) 완료

국내 민간자격 수련기관 인증 기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 및 필수수련기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수련시간은 학위별로 상이하여 석사학위 취득 수련생은 3년 이상 3000시간 이상, 박사학위 과정 수련생은 2년 이상 2000시간 이상, 박사학위 취득 수련생은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 수련을 해야 한다. 수련생은 일반적인 수련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하나, 총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총 수련기간 중 1000시간 이상) 필수수련기관에서 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수련내용평가를 통해 자격 검정이 진행된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필수수련기관'은 수련기관 중 한국임상심리학회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수련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련기관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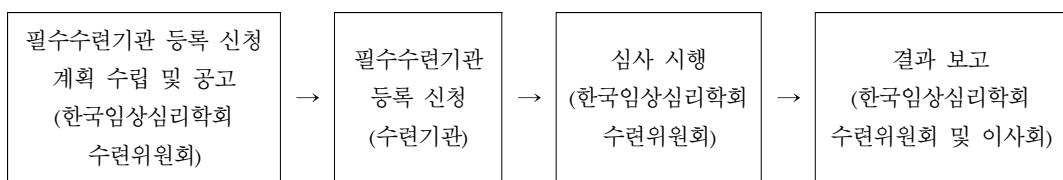
필수수련기관 인증 과정

필수수련기관은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된다.

필수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필수수련기관 인증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https://kcp.or.kr/new/page/sub03_2_1.asp)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수련기관의 환경, 필수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필수수련기관의 관리 및

입지 숙 등 /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 해외 법제화 자격 및 국내 민간자격을 기반으로



주.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https://kcp.or.kr/new/page/sub03_2_1.asp)의 내용을 토대로 필수수련기관 인증 과정을 정리함.

그림 2. 임상심리전문가 필수수련기관 인증 과정

자격 유지'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명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필수수련기관의 환경

일반적인 수련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이 해당된다. 필수수련기관은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 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수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필수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필수수련기관의 수련 내용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수련기관의 수련 내용은 수련교육 계획서 및 수련과정 개요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작성 시, 1년 또는 3년 기준에 준하여 계획서를 작성, 교육 일정 및 시간과 내용(커리큘럼), 해당 교육의 수련감독자,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표 9. 임상심리전문가 필수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수련기관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내용	<p>• 수련기관 평가서</p> <p>- 수련기관 시설 기준 및 활동 영역</p> <p>- 수련생 인원 및 선발 방식</p> <p>- 수련생 지위 및 급여 수준</p> <p>•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 등</p>

표 10. 임상설립전문가 필수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내용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 계획서 및 수련과정 개요서 - 이론: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정신약물, 신경심리 - 실습: 심리평가, 개인/집단 심리치료, 사례연구, 학회 및 연구회 학술활동, 수련기관 내 학술활동, 대외협력 지원 사업

필수수련기관의 관리 및 자격 유지

필수수련기관은 임상심리전문가 1인 이상이 전임 및 상근 근무, 혹은 임상심리전문가 2인 이상이 전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기관에 소속된 임상심리전문가 전원이 수련감독자이어야 한다(수련감독자 활동 승인 상태).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의 경우, 적어도 1개 기관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상근전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방법은 학회 수련위원회의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필수수련기관으로 인준 신청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약 필수수련기관 인준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필수수련기관 인준 신청이 불가하다. 그리고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교육연수기관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급은 최소 학사학위 과정 중이어야 하며, 1급은 최소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수련시간은 2급의 경우 1년 180시간, 1급의 경우 3~4년 720시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수련내용평가를 통해 자격 검정이 진행된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련생은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연수기관은 모학회인 한국상담학회와 분과학회 혹은 지역학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으로 개인기관(혹은 일반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대학상담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관련 기관이 해당된다. 전문상담사 교육연수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https://>)

표 11. 임상심리전문가 필수수련기관 인증 요구 조건 - 필수수련기관의 자격 유지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필수 수련기관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감독자의 4개월 이상 공백 없음 • 수련생 급여 감축 없음 • 교육 및 실습 기회 감소 없음 • 인준 당시 신청된 수를 초과한 수련생 고용 및 모집/수료 보고 없음 • 필수수련기관 수련 과정 2년 이상 미개설 없음
수퍼바이저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감독자의 전년도 연수 평점 10시간 이상 • 당해 연도 임상심리전문가 윤리 교육 이수 • 해외 연수 등으로 연수 평점 취득 및 윤리 교육 이수가 불가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련감독자 활동 신청 가능

주. 필수수련기관으로 인준된 수련기관은 매해 '필수수련기관 수련과정 개설 신청' 절차에 따라 수련과정을 개설해야 함. 필수수련기관은 수련과정 개설 신청을 통해 해당 기관의 수련감독자, 수련 중인 회원 전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또한, 수련감독자는 매년 해당 기관의 수련생에 대한 모집보고와 수료보고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하며,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기간에 새로운 수련생들에 대한 모집 현황과 지난 1년간 수련을 이수한 수련생들의 수료 현황을 수련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counselors.or.kr)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환경

개인기관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이 있어야 한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은 수련생에게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및 발표, 연수/학술모임 등 다양한 영역의 수련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관리

개인기관 대표자는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1급 전문상담사 2명과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한다. 1명의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하다.

공공기관 대표자는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이어야 한다. 만약,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1급 전문상담사 2명이 있어야 한다.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후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직원 2명이 있어야 한다. 두 조건 중 반드시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직원이 1명 있어야 하고, 1명의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하다.

수련기관의 관리를 위해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서, 조직표, 재직증명서나 발령장, 근로계약서, 추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을 위해 신청 전 반드시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5년마다 재인증을 신청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해야

표 12. 전문상담사 교육연수기관 인증 요구 조건 - 수련기관의 환경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개인기관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한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3급과 2급의 경우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1급과 감독의 경우 최소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수련시간은 3급과 2급의 경우 1년, 1급과 감독의 경우 3년 이어야 한다. 자격시험은 3급, 2급, 그리고 1급의 경우 필기시험, 면접시험, 수련내용평가를 모두 시행해야 하는 반면, 감독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과 수련내용 평가만 실시해도 된다.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은 지역사회에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자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임상 실습 및 수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련기관은 대학교의 학생생활 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상담센터 및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accp.org/user/sub05_1.asp)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 관리,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수련기관의 환경

수련기관은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임상 실습 및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시설·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관이 속해있는 상위단체에서 발급하는 소속기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명세서와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수련기관은 수련상담자에게 상담 관련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수련상담자가 교육, 실습, 수퍼비전을 제공 받고 있는지와 사업 및 상담 실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관리

수련기관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수퍼바이저가 전임으로 근무하거나, 수퍼바이저 1인이 상근전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최소 1인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감독이어야 한다. 대표자, 수퍼바이저, 상담자의 자격증 사본과 채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련기관의 자격 유지

수련기관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 심사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대표 수퍼바이저의 변동 및 주소지와 시설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인증 유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감독은 ① 수퍼바이저 교육 (워크숍, 윤리교육 포함) 1회, ② 학술대회 1회 또는 인정 가능한 학회 행사 6시간과 윤리교육 1회 참여,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급은 ① 수퍼바이저 교육(워크숍, 윤리교육 포함) 1회, 교육 행사 3시간 참여, ② 인정 가능한 학회 행사 9시간과 윤리교육 1회 참여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표 13. 국내 심리상담 민간자격 수련기관 인증 기준

자격증	환경	내용	평가	관리	자격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 수련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관 • 필수수련기관: 입원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	• 이론: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정신약물, 신경심리 • 실습: 심리평가, 개인/집단 심리치료, 사례연구, 학회 및 연구회 • 학술활동, 수련기관 내 학술활동, 대외협력 지원 사업	• 임상심리전문가 최소 1인(상근전임)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최소 2인(전임) •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감독자 자격	• 개인기관: 대표자(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1명, 사무직원 1명 • 공공기관 1) 대표자(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1명, 사무직원 1명 2) 대표자(분과 및 지역학회장 추천인), 1급 전문상담사 2명, 사무직원 1명	정해진 기간 없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 개인기관: 대표자 명의 또는 임대 계약한 시설, 사무실 외 상담실 • 공공기관: 사무실 외 상담실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및 발표, 연수/학술모임 등	-	• 수퍼바이저 1인(상근전임) 또는 수퍼바이저 최소 2인(전임) •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감독 자격	5년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 교육, 수련 제공 시설 및 장비	• 교육, 상담 실습, 수퍼비전	-		3년

국내 심리상담 민간자격 수련기관 인증 기준

지금까지 국내 심리상담 민간자격 수련기관의 인증 기준을 자격증별로 살펴보았고 이를 표 13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수련기관 환경과 관련하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나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의 환경적 요건으로 수련 시설(상담실)이나 관련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은 구체적인 기관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예시에 해당하는 수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수련기관은 상담 관련 교육과 상담 실습의 제공을 인증 조건으로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은 근무 형태가 상근 및 전임일 때 수퍼바이저 최소 1인, 전임일 때 수퍼바이저 2인이어야 한다는 동일한 인증 조건이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의 경우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련기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구성과 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련기관의 자격 갱신과 관련하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은 학회 수련위원회의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인준 신청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정기적인 실사의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은 5년,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은 3년의 자격 갱신 기간이 제시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수련기관은 수련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 평가에 관한 항목을 인증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

해외 법제화된 국가의 수련기관 인증 체계와 국내 민간자격의 수련기관 인증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수련기관 인증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련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점수련기관(1차수련기관)을 중심으로 수련생들을 위한 기본수련과정을 제공하고, 공간적 제약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의 상담전문가(수퍼바이저급 이상)가 개인 혹은 소규모 수퍼비전이나 집단상담 등을 운영하는 일반수련기관(2차수련기관)에서 심화수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 연결모형을 구성하였다. 해당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련기관 중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 수퍼비전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갖춘 곳은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와 소수의 사설센터 정도뿐이다.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분회나 지역학회의 경우, 인적 구성은 수련을 할 수 있는 구조와 규모를 갖출 수 있지만 수련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장기적·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사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1인 센터 혹은 2~3인까지의 소규모 센터로 운영되어 수련생 교육을 위한 공간 확

보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물리적 공간을 갖춘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나 사설센터의 경우라도 반드시 수퍼바이저급의 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련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과 인적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는 소수의 기관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련 시스템은 대부분의 수련생이 개인적으로 내담자를 구하고 수퍼바이저를 찾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를 취득하고 수퍼바이저로서의 발달을 꾀하고자 하는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수퍼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나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은 접어두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반수련기관의 전문가가 거점수련기관에 등록하여 기본수련과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나 훈련에도 일부 참여하면서 자신의 센터에서 심화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이러한 정보를 내담자들에게 제공하면 무자격자의 상담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해외 법제화 사례들처럼 일원화된 기관에서 수련을 실시한다면 수련을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수련인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거점수련기관과 일반수련 기관으로의 이원화된 운영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한다.

수련기관 인증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와 국내의 수련기관 인증 내용을 아울러 상담자의 전인적(全人的) 발달을 추구하기 위한 공통적 요소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수련과정의 틀(frame)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학회(혹은 협회)는 거점수련기관의 인증과 재인증, 관리, 평가를 맡으며 자격시험, 수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모형 제안 등을 담당한다. 거점수련기관은 수련생 수련을 총괄하며 수퍼바이저를 관리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에서 수련의 중추적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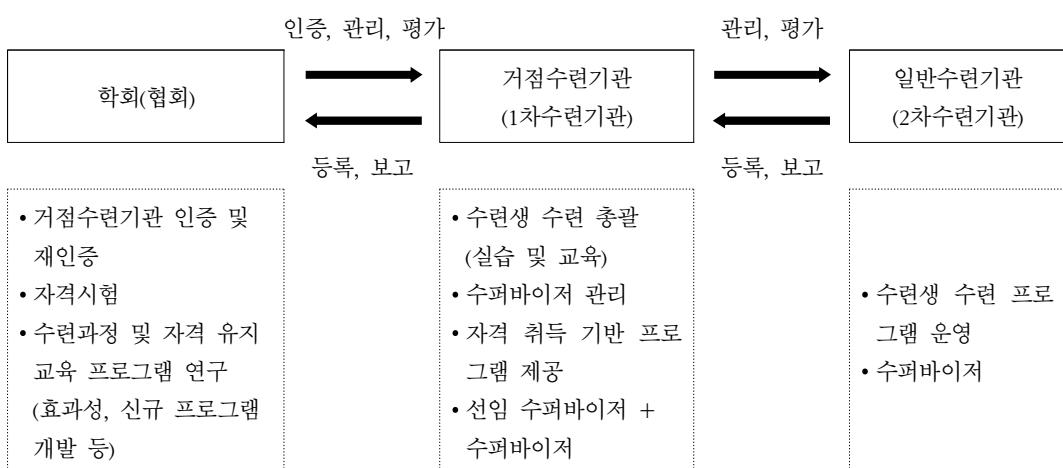


그림 3. 수련기관 운영체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반수련기관을 관리 및 평가하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거점수련기관은 기존의 분회나 지역학회에서 2개 이상의 학교나 기관, 센터 등이 협력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리적 공간과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학교, 기관, 센터 등이 협력하여 수련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련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수련기관은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들로, 거점수련기관에 소속된 형태로 일부 수련생에게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거점수련기관은 기본적인 표준화된 역량을 교육하는데 주력하며, 일반수련기관은 거점센터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심화된 전문영역의 교육이나 수퍼비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수퍼바이저를 선임 수퍼바이저와 일반 수퍼바이저로 나누어 거점수련기관에는 선임 수퍼바이저와 일반수퍼바이저가 모두 상주하고 일반수련기관은 거점수련기관에 소속된 일반 수퍼바이저가 1인 이상 상주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제안한다. 선임 수퍼바이저는 최소 5년 이상의 수퍼바이저 경력과 기관 운영에 대한 실무적 역량이 갖춰진 수퍼바이저이며, 일반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하고 상담 실무와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퍼바이저이다.

본 모형은 학회(협회), 거점수련기관(1차수련기관), 일반수련기관(2차수련기관)이 상호적으로 협력하는 모형을 제안하였으나, 과도한 행정절차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리감독 체계는 수련의 질적 향상에 집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지원 및 수련생 서비-

스 유료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수련기관의 표준화된 인증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국내외 수련기관 인증 요건을 조사 및 참고하여 필수 요건을 갖춘 수련기관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미국(주별 기준 상이)의 심리사와 상담사, 대만 심리사, 일본 공인심리사의 수련기관 인증 과정, 수련내용, 그리고 인증 요건 등을 조사하였고 호주의 경우, 수련기관 인증에서 주요한 부분인 수퍼바이저의 자격 취득과 유지 및 갱신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수련기관을 통한 수련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필수수련기관,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관련 수련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리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필수요건을 갖춘 수련기관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심리상담을 위한 수련의 중요성은 심리상담 관련 기 발의된 법안들(심리사법안,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등)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선행연구 결과(이홍숙 등, 2011; 한국심리학회, 2020), 해외 법제화된 국가들의 수련기관 중심

의 수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국내 심리상담 수련 형태는 개인이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하의상달식(bottom-up)의 형태로 보완,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추후 인증된 수련기관을 통한 수련 모형에서는 인증 요건에 대한 표준화된 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수련기관들을 신뢰하며, 동시에 각 수련기관별 세부적인 특성을 더해 수련할 수 있는 상의하달식(top-down)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법제화를 이룬 국가들과 국내에서 수련기관 인증 모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회들의 경우에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적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련기관을 통해 구현하는 상의하달식(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의하달식(top-down)의 수련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웃리치 지원 혹은 컨설팅 활동(미국 뉴욕주 심리사), 예방 및 홍보 사업(대만 심리사), 다양한 직업군과의 연계 경험(일본 공인심리사) 등을 할 수 있고, 또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기법 등에 대해서도 기관을 통해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인턴 혹은 레지던트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의하달식(top-down) 방식으로의 수련을 구현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급으로 이뤄지고 인원도 소수만 선발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의 심리상담 관련 수련은 수련생 개인이 자격 취득을 위해 세부 유목별로 정해진 횟수를 충족하고자 상당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수련의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전인적(全人的) 상담자 발달의 측면에서 상담자의 발달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안정적인 시스템 혹은 수퍼바이저가 부재함으로써 세부 기준 충족이라는 양적 측면 이외의 질적인 측면의 평가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국내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양성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 분과회가 1971년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자격규정을 공표하고 학문적 정체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1988년에 시작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발간 역시 25년 이상의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왔다(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krcpa.or.kr/user/new/sub01_2.asp). 질적인 성장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빠른 성장을 도모하여 국내 심리상담 관련 양대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약 4만명, 한국상담학회는 약 3만6천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에는 개인상담이나 수퍼비전의 필요성 확장에 따른 양적 기준 확대, 윤리교육 및 학회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이수 추가 등 필요에 따라 세부적 내용을 확장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앞으로는 학문적, 실무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된 수련 모형과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안하고 인증받은 수련기관을 통해 일관성 있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한 명 한 명 수련과정의 이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적 수치로 통과/미통과를 가르는 역할이 아니라, 상담자를 길러내기에 충분한 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환경적 지원과 수련감독자의 양적 측면의 수와 질적 측면의 관리 등을 전반적으

로 확인하며 수련기관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학회(혹은 협회)의 기능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련기간 동안 과정적 측면에서의 상담자 발달을 관찰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우며 동시에 적절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를 양성할 수 있다.

둘째, 법제화된 해외 국가들의 수련과정 인증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인적(全人的) 상담자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를 위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엄격성과 자율성', '수퍼바이저 권한에 대한 존중과 견제', '심리상담의 수월성과 다학제간 역량이 공존(共存)함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급여나 수련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무나 기기 지원, 제한된 기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적 수퍼비전 일정과 횟수 등은 양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수련 환경과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교육이나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식인지, 프로그램의 목표나 교육활동이 기관의 사명과 목표에 맞는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양적 그리고 질적인 수련교육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허를 소지한 박사급 수퍼바이저가 인턴과 수퍼비전 관계를 맺고, 수퍼비전이 제공되는 사례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평가(미국 심리사), 수퍼바이저와 상근 실습상담심리사의 인증 비율을 1:2로 제한(대만 심리사), 지도자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를 5명으로 제한(일본 공인심리사)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도 적용하지만, 동시에 '인증 기준은 다양한 방식으로 총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자료를 다양

하고 충분하게 제시하도록 권고'(미국 상담사)한다는 내용이나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기타 수련내용(예, 예방 및 홍보 사업이나 위기관리, 사례관리 등[대만 심리사], 멘토링이나 아웃리치 지원활동[미국 뉴욕주 심리사])을 평가에 유연하게 포함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저의 관찰과 평가를 중요 요소로 여기면서도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 실습생과 기타 관련자들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미국 심리사), 실습생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대와 요구, 평가 절차를 가지는 것(미국 상담사), 지속적이고 강력한 보수교육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 성찰적 사고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자격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호주 심리사) 등의 수퍼바이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었다. '심리상담의 수월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당 최소 2시간의 개인 수퍼비전을 포함해 최소 4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해야 한다거나(미국 뉴욕주 심리사), 개별 수퍼비전이 연간 주 1시간 이상 최소 50시간이어야 하고 집단 수퍼비전과 현장훈련, 사례검토 및 교육 시간이 최소 주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대만 심리사)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강도의 훈련과 함께, '인턴이 문화적, 개인적 차이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턴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미국 심리사)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복지, 교육, 사법·범죄, 산업, 노동의 5개 분야 중 학외시설 3분야 이상의 시설에서 실습 경험이 있는지(일본 공인심리사) 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추후 우리나라의 수련 기관 인증체계에도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련기관 인증은 내담자가 전문성을

갖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수련생의 경우 검증된 수퍼바이저에게 관리 감독을 받으며 상담사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적 혹은 윤리적 측면에서 안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수련생은 궁정적 수퍼비전 관계를 통해 수퍼바이저의 역할 혹은 행동 등을 모델링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김윤주, 2004; 임미경, 최응용, 2023), 수퍼비전 과정에서 사례에 대한 이해와 과정 개입을 위한 전문성을 습득하며 내담자 문제해결 및 내담자와의 관계능력을 향상시킨다(임미경, 최응용, 2023). 심리상담의 수퍼비전은 심리 상담서비스의 질(quality) 관리와 문지기 역할(gatekeeper)을 수행하기 때문에(이두희, 장유진, 2019) 인증된 수련 체계 내에서 수련받은 심리상담 전문가는 수퍼바이저와의 지속적 상호 작용과 평가를 통해 내담자에게 안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자격을 취득한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의 경우 수련기관 인증 체계 안에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자격갱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혹은 윤리적 측면에서 안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 민간자격증들도 보수교육과 자격 유지에 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5년간 수퍼비전 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에 1회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2회 이상의 학술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자격 갱신과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한국상담학회도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해야 하며 교육연수기관 자격 유지를 위

해서 5년마다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문 활동(예: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발달과 개신 활동, 상담 분야에서의 전문 서비스와 옹호 활동, 지속적인 상담 실무, 상담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미국 상담사의 CACREP 프로그램 참고])을 명시하지 않았고 호주의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전체 훈련(full training)과 같이 참여 이후 어떻게 전문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자격 갱신 및 보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된 국내 수련기관 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담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영국의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모형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사회복지관 모형처럼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련기관 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IAPT는 전문상담인력을 전국센터에 배치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매 회기 내담자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센터 단위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일상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김태종, 2023). IAPT는 단어 의미 그대로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 1만 1천명의 전문상담인력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인증 전문인력을 지역사회 센터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큰 효과를 거두었고, 이와 같은 접근법이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적극적인 아웃리치 사업, 협

업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서비스 분야는 상이하지만, 이미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모형 또한 수련기관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내 민간 자격증으로 수련기관 인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수련기관 인증은 주로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기관 시설 배치도, 자격증, 기본적인 활동 및 학술 대회, 워크샵 참석횟수 제한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수련계획서 및 수련과정 개요서와 평가서(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필수 수련기관)나 상담 관련 교육, 실습 수퍼비전에 관한 정보(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기관)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수련기관 인증을 통한 체계적 수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틀을 마련하였다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해외의 법제화 사례들과 비교하여 질적 측면의 평가를 보완하고, 다양하고 충분한 교육 및 수련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은 법제화된 해외의 수련기관 인증모형과 국내 민간자격의 수련기관 인증 관련 내용을 조사 및 참고하여 국내 실정을 고려한 기안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현재는 심리상담 관련 학회가 대부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검정의 기능을 함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으로 그 역할이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학회의 역할 제안과 함께 수련생의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 기타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충분한 수퍼바이저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거점수련기관(1차수련기관)과 일반 수련기관(2차수련기관)의 유기적 연결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모형에서 거점수련기관은 수련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관장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임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일반 수퍼바이저로 구성하였다. 거점수련기관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장은 (선임) 수퍼바이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기관의 행정, 운영, 프로그램 및 수련생 관리 등의 전반적 기관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미국 상담사 모형(핵심교수진, 박사과정 학생 수퍼바이저, 실습기관 현장 수퍼바이저), 호주의 수퍼바이저 모형(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 [BAS]),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주수퍼바이저)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책임이 큰 만큼 권력 또한 커질 수 있으므로 미국의 심리사처럼 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가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일본 공인심리사 제도처럼 수련생 심리지원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견제책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거점수련기관에 일반수련기관 수퍼바이저도 모두 등록을 하여 지역별로 촘촘한 수련감독자 망을 갖추고 일반수련기관에서는 거점수련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심화교육, 집단상담, 교육분석, 수퍼비전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

면 인증된 수련기관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련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 모형은 초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형의 구성요소와 구체적인 요건들(예, 수퍼바이저의 향후 자격 개선을 위한 세부적 기준)에 대한 추후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 법제화된 국가들의 경우 수련의 내용을 정하고 평가할 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1년, 3년 등의 거시적 기간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총 수련시간에 대한 산술적 계산은 주요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매주/격주/한 달에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 몇 사례 정도 개인 상담을 진행하며 수퍼비전을 받을지 등의 연속성 있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수련 기간 동안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1년 1000시간, 3년 3000시간 등의 결과론적 총합의 시간보다는 매월, 매주 단위의 공고한 계획이 누적되어 최종 시간이 산출되는 방식으로의 수련계획의 구체화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수련기관 인증에 대해 구체적인 모형을 발전시키고자 해외 법제화된 국가들의 수련기관 인증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련기관 인증을 위한 주요한 측면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안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외 법제화된 국가들의 수련기관 인증에서 수련환경의 주요 요소로 평가한 것의 핵심에 재정적인 부분이 존재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의 지원이나 보험의 적용, 노동법을 고려하여 수련생을

무급 혹은 유급 수련으로 규정할지의 여부 등 보다 거시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있어 이를 반영하여 논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한된 국가와 국내 민간자격을 바탕으로 한 자료이므로 추후 더 광범위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 혹은 변경하는 작업을 지속해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민철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2124540, (2023. 09. 18.) [임기만료폐기]
- 김윤주 (2004). 수퍼바이저의 과업 및 기능 수행과 상담 수련생의 수퍼비전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종 (2023년 11월 22일). 마음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나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9086#home>
- 박중규, 장은진, 정경미 (2022). 심리사법안이 규정한 심리사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71-293.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 서정숙 의원 외 10인, “심리사법안”, 2115453, (2022. 04. 29.) [임기만료폐기]
- 성현모, 이상민 (2021).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7-27.

- 심상정 의원 외 9인, “상담사법안”, 2116456, (2022. 07. 14.) [임기만료폐기]
- 안하얀, 이소연, 서영석, 안수정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I: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SWOT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407-1439.
- 이두희, 장유진 (2019). 수퍼바이저 피드백에 대한 상담 수련생의 인식과 경험. *상담학 연구*, 20(3), 217-242.
-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 이은영 (2022년 8월 24일). 2030 여성·직장인 '멘탈' 잡아라… 마음건강 스타트업 급성장.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8/24/L3IROMFENJESVESGVROGX35RAE/>
- 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인턴 상담원의 상담자 발달에서의 결정적 사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33-859.
- 임미경, 최웅용 (2023). 상담수련생의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1), 247-261.
- 전봉민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5039, (2022. 03. 31). [임기만료폐기]
- 최종윤 의원 외 9인, “심리상담사법안”, 2114984, (2022. 03. 28.) [임기만료폐기]
-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보건복지부.
- Scho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

원고 접수일 : 2024. 01.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5. 08
게재 결정일 : 2024. 08. 12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5, Vol. 37, No. 1, 33-67

Proposal for a Model of Training Center Accreditation to
Train Professionals in Psychological Counseling:
Based on Overseas Legislated Qualifications and
Domestic Civilian Qualifications

Jeesuk Lim	Boyoung Son	Sangeun Baek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Sunmoon University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instructor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raining Center Accreditation (TCA) and proposes a TCA model. We examined TCA requirements in the U.S., Taiwan, and Japan, as well as supervisor qualifications in Australia. In Korea, we reviewed the certification systems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and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d a TCA model that incorporates essential requirements tailored to domestic condi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raining under the structure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accredited training centers. Second, legislated training programs were fou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holistic counselor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CA. Third, TCA can ensure safe and ethical counseling while safeguarding clients' right to professional services. Fourth, TCA can support community-based counseling. Finally, we discuss the study'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Key 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training, training institutions, legislation, private practice,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accreditation model

부록 1.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가안의 구성요소 설명

1. 거점수련기관

- 지역의 대학상담센터, 분회,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담센터(상담센터는 2개 이상 연합하여 신청 가능) 해당
- 지역 내 모든 수련생은 거점수련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거점수련기관은 모든 수련생에게 기본수련과정을 제공
- 거점수련기관은 기본수련과정과 심화수련과정을 모두 제공할 수 있음. 단, 필수적으로 기본수련과정을 제공해야 함. 심화수련과정의 경우, 1) 거점수련기관에서 진행 또는 2) 거점수련기관에 등록된 선임수퍼바이저에게 위임하여 선임수퍼바이저가 운영하는 위탁상담기관에서 수련하는 것이 가능함.
- 지역 내 모든 수퍼바이저는 거점수련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거점수련기관 혹은 위탁상담기관에서 수련생 지도에 참여함.

2. 거점수련기관 인증 기준안

- 관련 서류 제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여부, 인증 유지 기간 결정
- 인증 유지 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3년, 5년의 인증 유지 기간 결정 (추후 인증 체계가 공고화되면 3, 5, 10년으로 변경을 제안함)
- 단독 혹은 2개 기관 이상이 연합하여 인증 가능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 수퍼바이저 1인, 수퍼바이저 2인• 상담, 검사, 교육, 수퍼비전 가능한 공간 확보• 재정적 안정성• 행정적 지원 체계• 학회 연회비 납부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생 선발 방식• 수퍼바이저 이력 및 자격 증빙 서류• 수퍼비전 진행 방식 (일정, 시간, 형태 등)• 연간 수련기관 운영 및 수련생 교육 계획서•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시스템

주. 수퍼바이저 중 1인은 수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상주 전담 인력으로서, 반드시 기관 내에 머물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주. 공간과 관련된 계약서, 도면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함.

주. 예산 및 집행 내역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함.

주. 수퍼바이저 1인당 최대 수퍼바이저 수 제한, 실습 기간 동안 수련생에게 주 1회 이상 수퍼비전 제공, 50분 수퍼비전 진행 시간 등 구체적인 수퍼비전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 수련생을 위한 충분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주.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윤리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임지숙 등 /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 해외 법제화 자격 및 국내 민간자격을 기반으로

3. 수련과정 (기본/심화)

기본수련과정: 거점수련기관 실시	심화수련과정: 거점수련기관, 일반수련기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면접• 상담 관련 행정• 상담 및 수퍼비전 참관• 기본 상담기법 및 의사소통 훈련•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매뉴얼 기반 객관적 검사)• 의뢰 시스템 학습• 아웃리치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 세미나(이론 및 연구 관련)• 구조화된 단기 상담/집단상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상담• 집단상담 (비구조화 집단 포함)•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포함)•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수퍼비전 (개인 및 집단)• 사례발표 및 모임 참여• 교육분석

4. 수퍼바이저의 급별 역할

선임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수련기관 운영• 수퍼비전 및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공개사례발표 주수퍼바이저 자격• 교육분석 제공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생 교육• 수련생 평가• 수퍼비전 제공 (개인, 집단)• 공개사례발표 부수퍼바이저 자격

주. 거점수련기관 수련 프로그램 총괄 운영하는 기관장 자격은 수퍼바이저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어야 함.

주.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제공하는 것,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5. 수퍼바이저 자격 인증 기준안

선임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3년마다 자격 갱신• 보수교육, 윤리교육 및 수퍼비전 교육은 격년으로 필수 이수• 거점수련기관에 등록
수퍼바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자격 취득 후 5년 미만• 매년 자격 갱신• 보수교육, 윤리교육 및 수퍼비전 교육은 매년 필수 이수• 거점수련기관에 등록